

●재정경제부공고 제2026-186호

「담배사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25일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

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담배사업법 개정('25.12.23일 공포, ' 26.4.24일 시행)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종전 “연초의 잎”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“연초나 니코틴”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. 이에 니코틴의 화학적 의미를 분자식 및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, 그 광학이성질체 및 혼합물, 염, 착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니코틴의 범위(안 4조의10 신설)

- 니코틴은 분자식 $C_{10}H_{14}N_2$ 로서 3-(1-methyl-2-pyrrolidiny)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(그 염류, 착물, 광학이성질체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. 8. 4.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(출자관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

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

- 전자우편 : jeonzzong@korea.kr

- 팩스 : 044-215-809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,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fe.go.kr>)를 참조하시거나,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(044-215-51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